

1. 의결주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에 따라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였으나, 기존에 감면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질소산화물 감면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추가하고, 자가측정 결과가 없는 경우의 확정배출량 산출에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계수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확정배출량 산정 시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지 않는 경우 황산화물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규정(별표 6)
- 나.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질소산화물의 기본배출부과금 면제(별표 1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가목1)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면 대상	감면내용(감면 비율)
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항제1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u>질소산화물, 황산화물</u> 또는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u>질소산화물, 황산화물</u> 또는 먼지의 <u>기본배출부과금</u> 면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특례) 별표 11제 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이 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기간 동안은 종전 규정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면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제1호> 가.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 지 않는 대기오염물질 1) 자가측정 결과가 없는 시설의 경우: 확정배출량은 <u>환경부령으 로 정하는</u> 대기오염물질 배출계 수에 해당 부과기간에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사용량, 원료투입량 또는 제품생산량 등 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 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 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 바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 대상</th><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내용(감면 비율)</th></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바.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총 량관리사업자로 서 같은 조 제1 항에 따라 <u>황산 화물</u> 또는 먼지 에 대한 배출허 용총량을 할당받 은 사업자 </td><td style="vertical-align: top;"> 배출허용총량을 할 당받은 <u>황산화물</u> 또 는 먼지의 <u>배출부과 금</u> 면제 </td></tr> </table>	감면 대상	감면내용(감면 비율)	바.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총 량관리사업자로 서 같은 조 제1 항에 따라 <u>황산 화물</u> 또는 먼지 에 대한 배출허 용총량을 할당받 은 사업자	배출허용총량을 할 당받은 <u>황산화물</u> 또 는 먼지의 <u>배출부과 금</u> 면제	<별표 6 제1호> 가. 자동측정기기로 측정·전송하 지 않는 대기오염물질 1) 자가측정 결과가 없는 시설의 경우: 확정배출량은 「<u>대기환경 보전법</u>」 시행규칙 별표10에 따 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해 당 부과기간에 사용한 배출계수 별 단위량(연료사용량, 원료투 입량 또는 제품생산량 등을 말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 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 바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 대상</th><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내용(감면 비율)</th></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바. 「<u>대기관리권역 의 대기환경개선 에 관한 특별 법</u>」 제15항제1 항에 따른 총량 관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17조 에 따라 <u>질소산 화물, 황산화물</u> 또는 먼지에 대 한 배출허용총량 을 할당받은 사 업자 </td><td style="vertical-align: top;"> 배출허용총량을 할 당받은 <u>질소산화물, 황산화물</u> 또는 먼지 의 <u>기본배출부과금</u> 면제 </td></tr> </table>	감면 대상	감면내용(감면 비율)	바. 「 <u>대기관리권역 의 대기환경개선 에 관한 특별 법</u> 」 제15항제1 항에 따른 총량 관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17조 에 따라 <u>질소산 화물, 황산화물</u> 또는 먼지에 대 한 배출허용총량 을 할당받은 사 업자	배출허용총량을 할 당받은 <u>질소산화물, 황산화물</u> 또는 먼지 의 <u>기본배출부과금</u> 면제
감면 대상	감면내용(감면 비율)								
바.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총 량관리사업자로 서 같은 조 제1 항에 따라 <u>황산 화물</u> 또는 먼지 에 대한 배출허 용총량을 할당받 은 사업자	배출허용총량을 할 당받은 <u>황산화물</u> 또 는 먼지의 <u>배출부과 금</u> 면제								
감면 대상	감면내용(감면 비율)								
바. 「 <u>대기관리권역 의 대기환경개선 에 관한 특별 법</u> 」 제15항제1 항에 따른 총량 관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17조 에 따라 <u>질소산 화물, 황산화물</u> 또는 먼지에 대 한 배출허용총량 을 할당받은 사 업자	배출허용총량을 할 당받은 <u>질소산화물, 황산화물</u> 또는 먼지 의 <u>기본배출부과금</u> 면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연 락 처	(044) 201-6717